

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에 대한 기본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보험가입대상, 보상범위, 보험료 납입방법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피해신고, 보험료 청구, 보험금액 산정(안 제6조 ~ 제8조)
- 라. 보험금 지급, 지급제외 규정(안 제9조 ~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실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시민안전보험” 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이란 구미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구미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2. “보험기관”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.
3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.

제3조(보험가입대상) 구미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된 외국인 포함)을 피보험자로 한다.

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보험료 납입방법) 보험료는 구미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.

제6조(피해신고 및 조사)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.

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적극 협

조하여야 하며,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금 청구)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.

제8조(보험금액 산정)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.

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(보험금 지급)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험금 지급제외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
3.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6조(재난 보험 등의 가입 등)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·공제(이하 "보험등"이라 한다)를 개발·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·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, 붕괴,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·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

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1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시설물

2. 삭제 <2017. 1. 17.>

3.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

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,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,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,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들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가입으로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한 보험료의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구미시민 인구 : 425,586명 (2019. 5월말 기준, 외국인 포함)
- 1인당 연간 보험료 : 700원 $\Rightarrow 425,586\text{명} \times 700\text{원} = 297,910,200\text{원}$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(a)						
세출(b)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1,489,550
총 비용(a-b)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1,489,55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1,489,550
민 간						
기 타						
합 계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297,910	1,489,550

5. 부대의견

- 실제 비용은 보험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변동 가능
- 경상북도에서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검토 중으로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재난과 김수진
연락처	054-480-6734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시민안전보험료 : 297,910천원

- 예산편성 : 안전재난과
- 산출기초 : 700원 $\times$ 425,586명 정도 $\times$ 1년 = 297,910천원

소관 실·과		안전재난과
입 안 자	과 장	권 동 철
	담 당	박 혜 선
	담 당 자	김 수 진 (480-6734)